

☎100-7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31번길 ☎호주 02) 731-6748 ☎전송 733-95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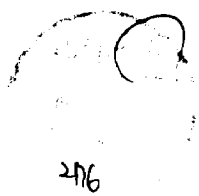
공사번호 : 건설 30310 - ~~900~~ 900

시행일자 : 92.10.22

(강유) : 제1안

수신 : 보트길자

종류 :



취급		시 장
부서		AM7
부서장	전경	
도시계획국장	[Handwritten Signature]	발부담담당관
시설계획국장		보조건설계획1과장
개인	이항구(시설과장)	가르계획2과장
		합계

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정,주차)변경결정 일안 및 공람공고

1. 중건 토일30500-2013(92.9.18) 철도청 건설30310-831(92.10.5)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사 16101-10777(92.9.21)호와 관련 일한다.

2. 종합건설본부중으로부터 본부간선도로(상신대교 - 강릉대동)를 통행용 275 + 425번지간 보강, 사립대입지 및 도로 선형변경과 철도청장으로부터 지하철도건설 및 환경정비사업 설계용 구도계획,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경부고속도로의 일차 1.0호 정거장에 따른 공정, 주차용 도시계획변경결정 요청이 있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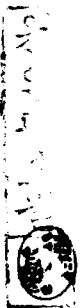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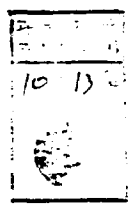
3. 동 도시계획(안)이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권고사항과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후 도시계획을 일안으로 결정한다.

4. 공람공고사항

- 1) 구제권은 : 불침묵기간
- 2) 구제일자 : 일간신문 2개 사(고), 석간 각1개 사
- 3) 구제일자 : 92.10.19 ~ 92.10.24일 간
- 4) 구제예산 : 1,431,200원 (3면 x 7cm x 31,000원 x 2개 사 x 1.1)
- 5) 구제방법 : 간접수익금, 도시계획, 시설계획, 수송비 및 수수료

첨부 : 1) 도시계획 결정본 1부,

2) 도시계획 변경 권고사항 검토서 1부, 끝.



자본금

주식 자본금

자본 (도시계획)인)일건신분 기재 공고 으로

1. 도시개발사 설립하는 법령 도시계획(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이 소위 일건신분이 기재 등(이하)로 요보호하되 그7항에 주사
가 포함되고,

2. 자본금 100억 원

3. 주자본은 1 일건신분 99개사 조, 선건 1개사

4. 주자본액 99,100,000,000원 (99,100,000,000원)

5. 주자본액 : 8천 x 7천

6. 주자본액 : 1,432,200원

7. 주자본액 100억 원

도시계획특례법



자본금

주식 자본금

공제 자본금

자본 (도시계획)인)공제 자본금

도시개발사 설립하는 법령 도시계획(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이 소위 일건신분이 공제 자본금(이하)로 요보호하되 동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이 반영되지 않음.

1. 주자본은 동법 제16조의2 규정이 반영하는 사항을 요보호하되 동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이 반영하여 공제 자본금과 같은 액수를 자본금에 반영,
2. 주자본액 100억 원

특별시장

도시개발사 설립하는 법령 도시계획(인)공제 자본금

주 소 : 평택시청 특별시장

주 문 :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문

1. 중건 도읍 30500 - 2013(92.9.18)호와 관련임.

2.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다만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특별시청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
여 특별시청에서 공람장부를 공고하고 바름.

장 회 : 특별시청 1부

서 을 특 별 시 장



공공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하고자 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건설하고자 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건설하고자 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시행기간 : 1992.10. ~ 199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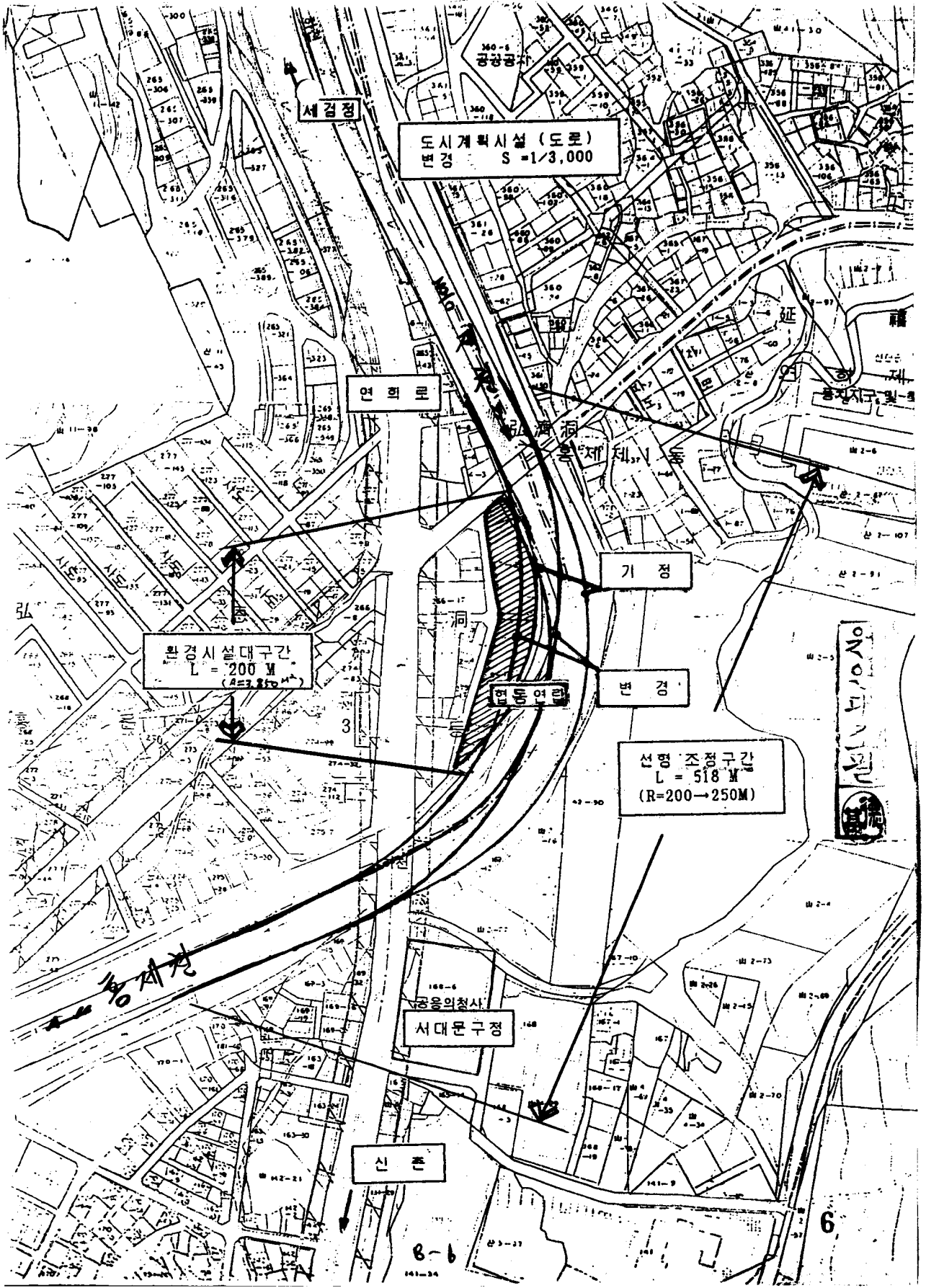
도시계획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1-6346~8, 신도림동 26-26-1385~6, 관악구 신림동 880-3385~8, 서초구 서초동 576-6385~7

1992. 10. 2

공공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	소재지	면적
신도림동	신도림동 275-56~	R-26n → 26-49m
	신도림동 425-1	L-518n
신도림동	신도림동 2910번지 일대	6,096㎡ → 8,557㎡
		증 1,459㎡
신도림동	신도림동 225-1 일대	133,000㎡ →
		137,100㎡ (증 24,100㎡)
신도림동	신도림동 225-1 일대	115,000㎡ →
		112,620㎡ (감 2,380㎡)

이 계획도면은 별첨(생략)함.
 (공공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S=1/3,000

환경시설대구간
 L = 200 M
 (R=200-250M)

선명 조정구간
 L = 518 M
 (R=200-250M)

공공의청사
 서대문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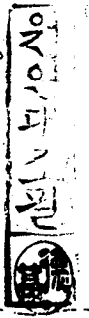
신촌

연희문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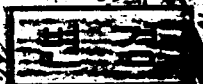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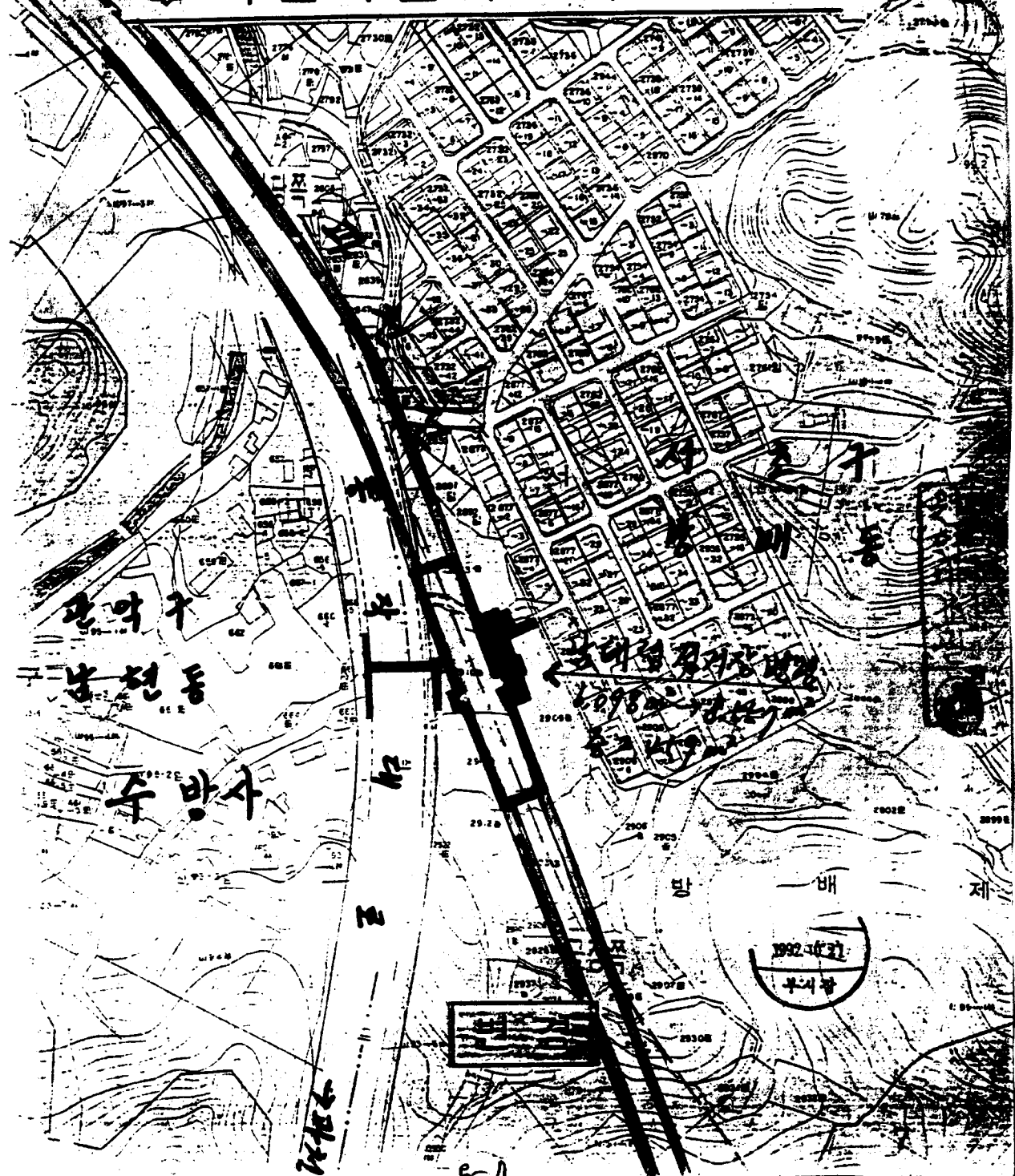
동충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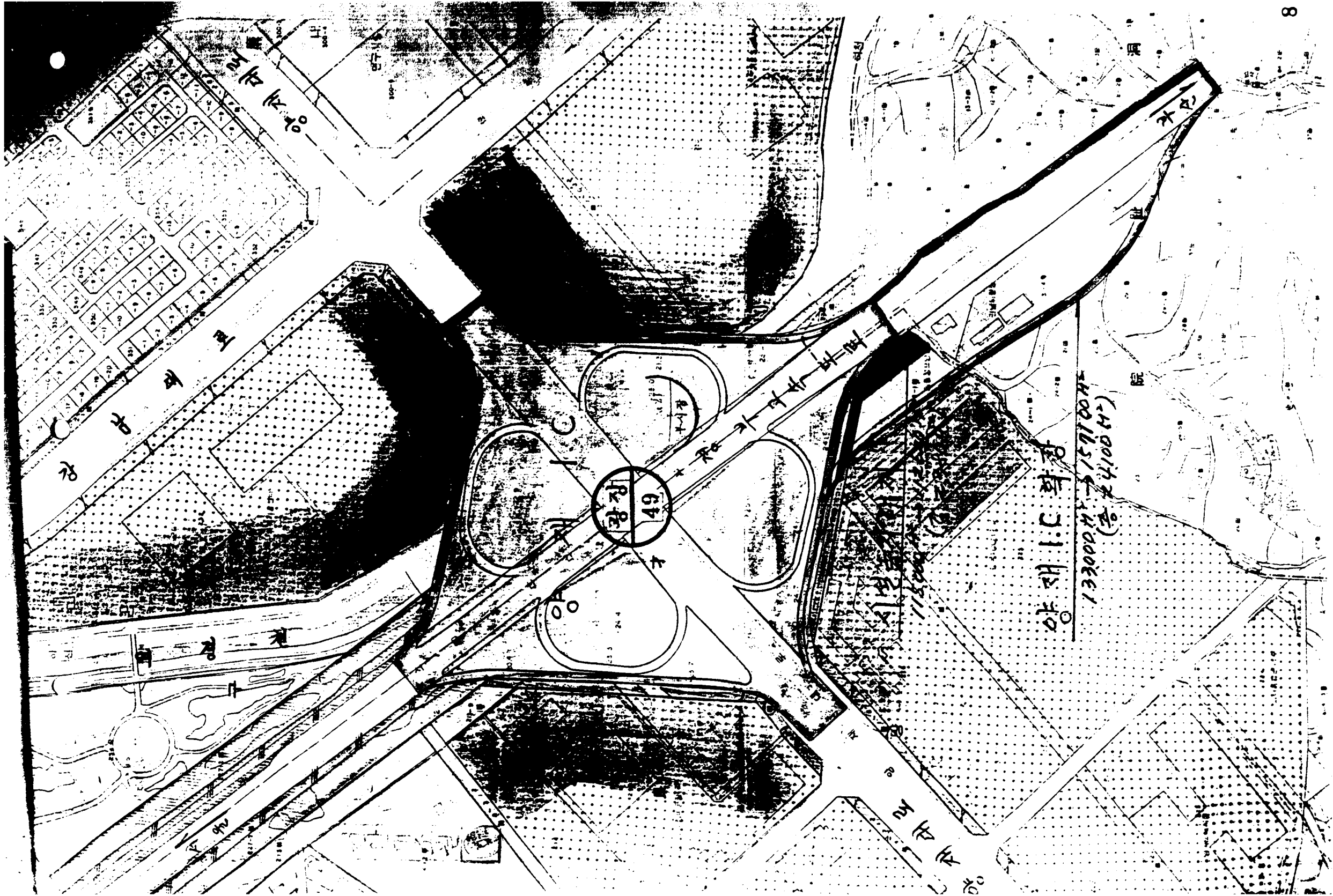


8-6

6

서울특별시도시계획도





광장 49

양 3.1 12 30

133000 (중 4100 H) (H 00172 W 00061)